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회)	

국방방첩본부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방첩본부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계획에 따라 군 방첩 및 국방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처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방첩본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운영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군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활동의 범위와 권한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군 관련 방첩업무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 및 사이버보안 업무 등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무 수행의 기본원칙과 권한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수립 및 국회 보고, 직무수행 시 이의제기 절차, 정치적 중립의무 등의 권한과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정보활동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체계를 제도화하고, 감찰기능 강화, 직원에 대한 인권지도 및 헌법가치 교육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군 정보기관이 민주적 통제하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령의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법령 제정의 근거 법률과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조직개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나.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3조)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 및 법령 준수, 정치적 중립 유지, 권한 남용 금지, 기본권 침해 금지 등을 명시하여 정보활동의 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치관여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함.

다. 직무의 범위 규정(안 제4조제1항)

군 방첩 업무,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최소범위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업무, 대응활동, 지원 업무에 대한 세부 직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함.

라. 방첩정보활동에 대한 국회 통제체계 규정(안 제4조제3항·제4항)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부대 개편을 포함한 주요 업무를 상임위원회 요청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보활동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체계를 제도화함.

마. 직무 상 금지사항 규정(안 제4조제5항)

직무 상 동향조사, 인사첩보 등에 대한 정보수집은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며, 불법비리 정보가 식별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이첩하도록 함.

바. 직무수행 시 이의제기 권한 규정(안 제5조)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정한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함.

사. 자료의 제출 요청 등 규정(안 제6조제1항)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정된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군 안보수사협의체 구성 근거 규정(안 제6조제2항)

군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보수사협의체에 참여토록 명문화하여 정보, 수사, 보안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능과 수사 기능 등 분리에 따른 우려를 해소함.

자. 조직 구성 규정(안 제7조)

본부장, 감찰실장 등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차. 본부장 등의 신분,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본부장, 감찰실장 등의 신분, 임무를 규정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함.

카. 정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본부 조직에 대하여 군인(병 정원 제외)과 군무원을 합산한 정원 중에서 군무원 정원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함.

타. 직원 인권지도 교육 의무 규정(안 제13조)

소속 군인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조직문화 차원의 인권 보호체계를 마련함.

파. 직원 헌법가치 교육 의무 규정(안 제14조)

소속 군인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시 헌법질서 존중, 기본권 보호 및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헌법가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직문화 차원의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방방첩본부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 방첩(防諜) 및 국방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방첩본부(이하 “방첩본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방첩본부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국방부장관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3조(기본원칙) ① 방첩본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방첩본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과 군인등에 대한 정보 수집,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3. 군인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남용하는 모든 행위
4.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등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③ 제2항제1호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

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제4조(직무) ① 방첩본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

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

나. 군사기밀 및 방위산업기술과 연계된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다.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라. 「군사기밀 보호법」 등에 따른 군사기밀의 보호에 관한 정보

마. 제1호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에 한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1) 「정부조직법」 제36조에 따른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2)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군·합동참모본부·합동부대
· 기관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전문연구기관

단, 방위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은 군사기밀 및 방위산업기술과 연계된 업체 및 연구기관에 한함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2.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고 군사기밀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제1호마

목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활동

단, 대응활동은 정보검증, 방첩교육, 정보제공, 징계 및 수사의뢰, 정보망 운용, 상호협력, 외교조치 건의로 한함

3. 국방 사이버보안 업무

4.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가. 사이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나. 제1호마목에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

다. 대테러·대간첩 작전에 대한 정보 지원

라.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방첩본부 직무로 규정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방위사업청장 및 기타 관계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본부장은 방첩본부의 부대 개편을 포함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요청할 때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대한 정보수집은 금지한다. 또한 정보수집 간 불법비리 정보가 식별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이첩한다.

1. 동향조사(지휘관을 포함한 군부대의 부대관리, 교육훈련, 준비태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배포하는 행위)

다만, 별도 관련규정에 명시된 대국가전복대상부대는 제외

2. 인사첩보(제1항제1호의 직무와 직접적 연계성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신상 변화, 지인관계, 주변 평가 등 개인정보를 수집·분석·배포하는 행위)

제5조(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① 방첩본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방첩본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도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① 본부장(제7조제2항에 따른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을 포함한다)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첩본부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를 수집한 경우 군 수사기관과 공유하며, 군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보수사협의체에 참여하고, 군 수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해야만 한다.

제7조(조직) ① 방첩본부에 본부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② 방첩본부에 본부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며, 본부장 소속으로 부대 및 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본부장 등의 임명) ①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본부장 등의 임무) 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방첩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찰실장은 방첩본부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각군에서 직무범위 외 행위에 대해 감찰 신고한 경우를 포함)

2.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감찰 조사결과의 준법감찰위원회 보고

③ 1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방첩정보

2. 대테러정보 지원

④ 2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방산정보

2. 사이버보안

3. 합동조사 지원

⑤ 방첩본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정원) ① 방첩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 등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제외한 본부 조직에 대하여 병을 제외한 군인 정원과 군무원 정원을 합산한 정원 중에서 군무원 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11조(무기 휴대 및 사용) ① 방첩본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은 직무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며, 무기 휴대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인권지도 및 감독) 본부장 및 소속 부서, 부대, 기관의 장은 군인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

고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헌법가치 교육) 본부장은 소속 군인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6575